

환경개선부담금 []조정 부과 통지서 []환급

※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시를 합니다.

납부의무자	성명(법인명)	생년월일(법인등록번호)
	상호	
	주소	

[]조정 부과 []환급	계		
	부담금	가산금	미납 부담금
	[]조정 부과금 []환급금		
	[]조정 부과 결정일 []환급 결정일		
	[]수납 []환급은행 및 계좌번호		

사유

납부고지서 코드번호

「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」 제9조·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을 []조정 부과 []환급함을 알려 드립니다.

이 통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「행정기본법」 제36조에 따라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,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「행정심판법」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「행정소송법」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년 월 일

특별시장, 광역시장, 특별자치시장, 도지사, 특별자치도지사,
특례시(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)의 장

직인

작성방법

- 납부의무자란에는 조정 부과 또는 환급 대상 시설물의 상호, 소유자 또는 점유자 성명, 시설물 주소를 적습니다.
- 사유란에는 조정 부과 또는 환급하게 된 사유를 간략하게 적습니다.